

‘총선특수’ 빛좋은 개살구

오는 4월15일에 실시될 제17대 총선거에 앞서 인쇄업계가 내심 총선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선거특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치러질 총선에서는 기존의 인쇄물 위주 홍보 방법에서 영상매체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온라인 매체 등 다양화

이번 4.15 총선은 대중동원의 압박이 컸던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방송을 통한 후보자 연설회가 개최되며, 인터넷 전자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독려된다. 더구나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도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 돼 각 당은 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비교적 물증이 확실한 인쇄물을 활용하며 무리하게 홍보전을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호재 있었으나 실제 효력 미미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이 지난 16대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몇몇 부분은 분명 총선특수가 될만한 호재였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총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4월2일~4월14일) 120일 전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은 길이 9cm 너비 5cm의 명함을 제작, 돌릴 수 있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란 명시 아래 길이 27cm 너비 19cm, 8면 이내의 사각형 종이에 4색도 이내로 100g/m²(재생종이인 경우 120g/m²) 이내의 종이에 인쇄된 홍보물을 2만명 이하, 혹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10에 발송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예비후보의 사전선거 운동이 지난 3월13일을 전후해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겨우 20일 정도만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거법에 명시돼 있는 예비선거운동 기간 120일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비 후보에 대한 선거특수는 막상 커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시에 따른 1인 2표제가 실시됨으로써 투표용지 물량은 두 배로 증가했다. 그

러나 투표용지가 총유권자수의 두 배만큼 인쇄된다고 하더라도 인쇄단가가 그리 높지 않다. 이에 투표용지의 추가물량은 전체 총선거 인쇄 금액의 약 4% 수준에 불과, 역시 큰 특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6대 국회에 비해 16개(7%)의 지역구가 증가한 것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 등의 전체 선거 인쇄물의 증가를 불러와 그나마 가장 큰 총선 인쇄물 증가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전체 선거비용은 연간 인쇄업 총 생산액인 5조원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억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16대 총선보다는 다소 증가한 128억 원 예상

중앙선관위원회는 오는 17대 총선거의 총 유권자수는 3570만84명, 총 세



대수는 1702만6008명, 부재자 수는 99만494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의 유권자 관련 기본 자료와 조달청에서 발표한 2004년 인쇄기준요금, 지난 2002년의 대선 기간 중에 발생한 선거인쇄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올 총선의 예상 인쇄물량을 추정해 봤다.

전체 유권자수와 같으며 $10 \times 20\text{cm}$ 크기로 인쇄 될 투표용지는 지역구 선거에 사용되는 백색용지($100\text{g}/\text{m}^2$)와 정당투표용으로 사용되는 녹색 투표용지($100\text{g}/\text{m}^2$) 등 2종으로 최소 7140만 매 이상, 약 6억원어치가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243개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새 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주주의연합, 민주노동당, 무소속 1인 등 평균 6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약 후보자 1500명의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이 제작된다.

이중 선전벽보는 길이 53cm 너비 38cm 규격의 $100\text{g}/\text{m}^2$ 이내 용지에 4색도 이내로 인쇄된다. 후보자별로 동에는

500인에 1매, 읍에는 250인에 1매, 면에는 100인에 1매의 비율로 제작되며 인구밀집상태 등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선전벽보는 약 102만3480매가 인쇄되고 비용은 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공보와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은 각 입후보자별로 세대수와 부재자수를 합산한 물량만큼 인쇄된다. 선거공보는 길이 26cm 너비 19cm 의 규격에 2매(양면 게재 가능) 이내로 $100\text{g}/\text{m}^2$ 의 종이에 4색도 이내로 인쇄되며 점자형 선거공보도 제작 가능하다.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의 규격으로 $100\text{g}/\text{m}^2$ 의 사각형 종이에 4색도 이내로 발간된다. 선거공보와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각각 1억809만9012부가 인쇄되며 비용은 18억원과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홍보 포스터 제작에 약 1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예비후보들도 약 10억원 내외의 인쇄물을 의뢰한다고 추정하

면 이번 선거와 관련, 128억원 정도의 인쇄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용지 값 제외하면 약 60억원선 불과

128억원은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금액에서 인쇄단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용지 값을 제외하면 순수 인쇄업체의 몫은 60억원 내외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더구나 선거 인쇄물은 전국의 인쇄업체에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업체에 작업이 편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과세당국이 선거특수를 이유로 인쇄업 전 업종을 호황업종으로 지정, 평년보다 21%라는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책정한 적이 있다. 전체 생산액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안을 특수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에 작업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전 업체를 대상으로 높은 과세율을 책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갑준 기자〉